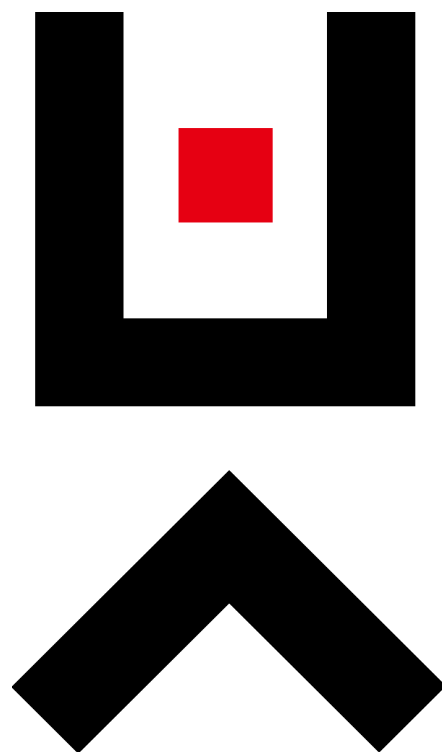

과업지시서

2024부산비엔날레 전시장 조성 공사 업체 선정



2024. 5. 31.

사단법인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

1 과업개요

1. 사업명 : 2024부산비엔날레 전시장 조성 공사
2. 전시개요
 - 가. 행사명 : 2024부산비엔날레
 - 나. 전시주제 : 《어둠에서 보기》, *Seeing in the Dark*
 - 다. 일 시 : 2024. 8. 17. ~ 10. 20, (65일간)
 - 라. 장 소 : 부산현대미술관, 원도심 등 부산시내 일원
 - 마. 주 최 : 부산광역시, (사)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
3. 과업목적 : 2024부산비엔날레 개최 장소의 전시 공간화
4. 용역기간 : 계약체결일 ~ 행사종료 결과보고서 제출시까지
 - 공사기간 : 2024. 7. 1 ~ 8. 16
 - 유지·보수기간 : 완공일로부터 ~ 10. 20
 - 철거 및 복구공사 : 2024. 10. 21 ~ 11. 4
5. 사업설명 : 제안요청서 참조
6. 사업비 : 일금이억원정(₩200,000,000 부가세 및 제세공과금 포함)
7. 계약방법 : 협상에 의한 계약
8. 과업주체 : 이하 본 과업지시서에는 주최자인 (사)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를 ‘발주처’ 라고 하고, 과업수행자를 ‘선정업체’ 라고 한다.

2 과업의 내용

1. 일반사항

- 가. ‘선정업체’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, 과업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‘발주처’의 지시에 따라 보완해야 한다.
- 나. ‘발주처’측의 설계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 ‘선정업체’는 안전·특이사항 등을 검토하고 ‘발주처’와 협의 후 시공을 진행한다.
- 다. 착수계, 준공계 등 관련 법규와 규정에 의거 제출한다.
- 라. 과업의 사업 계획 및 수행은 ‘발주처’와 면밀한 협의 및 세부내용별 사전승인을 받아 진행하되, 필요에 의해 ‘발주처’가 과업의 범위 및 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를 거쳐 이를 성실히 반영한다.

2. 과업의 일정

- 가. 용역기간 : 계약체결일 ~ 행사종료 결과보고서 제출시까지
- 나. 공사기간 : 2024. 7. 1 ~ 8. 16
- 다. 유지·보수기간 : 완공일로부터 ~ 10. 20
- 라. 철거 및 복구공사 : 2024. 10. 21 ~ 11. 4

3. 과업의 범위

가. 공간적 범위

- 전시공간 세부설시설계(생략 가능) 및 내역서 작성
- 전시공간 조성공사 : 가설공사, 벽체구성공사 등을 포함한 공간 조성공사 및 천장구성공사, 철거 및 복구공사
- 구조물 제작(좌대, 선반, 벤치 등) 및 공간연출에 필요한 추가작업 등
- 전시기간 중 전시공간 및 제작물 유지, 보수 및 관리 등 전시공간 사후관리
- 전시종료 후 전시장 철거 및 복구(벽, 천정 등), 폐기물 처리
- 기타 전시장 조성 공사와 관련하여 ‘발주처’ 에서 별도 지정하는 사항 등

나. 공간별 세부사항

구분	위치	주소지	면적(㎡)
A	사하구 하단동	부산시 사하구 하단2동 낙동남로 1191, 부산현대미술관 (지하 1층 ~ 지상 2층)	5,780
B	동구 초량동	부산시 동구 충장대로 160 협성마리나 G7 지상 2개층(2~3층 25개실)	1,755
C	동구 초량동	부산시 동구 초량상로 117-8 초량재 (지상 1층 ~ 2층, 마당, 옥상)	347
D	동구 초량동	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206 팬스타 배	부분 사용

다. 주요조건

- 공사범주는 설계도서에 따른 대상 공간 조성 공사 및 ‘발주처’ 와 협의가 이루어진 작품별 전기설비 및 조명사용, 대피동선, 구조물 제작(좌대, 선반, 벤치 등), 철거 및 원상 복구까지로 한다.
- 자재 확보 및 시공은 전문작업자가 수행하며, 작업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기본적인 안전(사고)과 여러 특이사항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한다.
- ‘발주처’ 가 지정한 예산범위 내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. (장비비, 교통비, 인건비, 자재비, 유지보수, 폐기물 처리 등 전시장 조성비용 및 철수 일체)

- 계약기간 내 시공내역의 유지보수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전시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즉시 착수 가능하며 수시 협의·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.
- ※ 과업의 모든 기본 사항은 설계도면과 합의된 내역서, 시방서 등에 준함
- ※ 단, 현장 및 전시 여건에 따라 발주처와 선정업체의 공동협의 하에 변경 가능함

3 설계·시공 및 설치 조건

1. 전시공간 실시설계

- 가. ‘선정업체’는 ‘발주처’가 제공한 기본공간(안)의 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설계를 진행한다(생략가능).
 - ‘발주처’가 정한 가벽(파티션) 높이를 반영하여 설계한다.
 - ‘발주처’가 수시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수정하며 ‘발주처’와 합의하여 확정한다.
- 나. 주요 시공 소재는 ‘발주처’가 정한 소재로 설계한다.
 - ※ 기본설계도서를 바탕으로 ‘발주처’가 지정하고, 기타 ‘발주처’와 ‘선정업체’가 협의한 소재를 사용한다.
- 다. 실시설계 시 관람객의 동선 및 충분한 관람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.
- 라. 중량구조물의 안전한 설치가 가능하도록 구조 검토 및 내역을 산출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한다.

2. 전시공간의 시공

- 가. ‘선정업체’가 작성하여 확정된 실시설계대로 시공한다.
- 나. ‘선정업체’가 확정된 실시설계를 토대로 인력투입계획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제출한 후, ‘발주처’와 합의하여 진행한다.
- 다. 상호 합의된 일정은 ‘발주처’가 인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엄수 한다.
- 라. 시공에 투입되는 인력은 법이 정한 안전 장비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여야 하며, 선정업체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마. ‘선정업체’는 시공에 필요한 재료를 해당 공정전까지 확보, 시공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, 계약일 기준 자재비용을 산정하고 이후 물가상승률에 따른 추가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.
- 바. ‘선정업체’는 작품 및 관람객 안전 관리상 위험요인이 있는 시공사항에 대해서 기존설계비용 내에서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.

- 사. ‘선정업체’는 ‘발주처’가 지정한 전시관의 가벽(파티션)을 시공한다.
- 아. ‘선정업체’는 중량구조물의 안전한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한 ‘발주처’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시공한다.

3. 전시공간의 철거 및 복구

- 가. ‘선정업체’는 전시행사 종료일(2024. 10. 20) 10일 전까지 전시공간 철거계획을 ‘발주처’와 상의하여야 한다.
- 나. ‘선정업체’는 전시행사 후 전시작품이 완전히 철수하기 전까지는 전시공간을 철거하여서는 안 된다. ※ 작품철수 일정 추후 통보
- 다. 전시공간 철거에 따른 폐기물 처리 등 철거비용은 시공예산에 포함한다.
- 라. 전시공간의 철거복구는 장소 대관 종료일 전에 마무리하여야 한다.
- 마. ‘선정업체’는 기타 공간철거 및 복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‘발주처’가 요구하는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.

4. 현장 관리

- 가. 작업자는 반드시 ‘선정업체’의 전문설치인력이 진행해야 한다.
- 나. ‘선정업체’는 설치과정 중 전시장이나 기반시설이 손상될 경우에는 즉각적인 복구 및 변상을 해야 한다.
- 다. ‘선정업체’는 전시장 내 작품을 절대 임의로 이동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되며, 시공 및 공간의 보수 등으로 인한 작품의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 발주처 담당자에게 사전보고 후 지시사항에 따른다.
- 라. 작업자의 풍기 및 위생단속을 철저히 하고, 당일 작업이 완료되면 작업장의 정리정돈, 청결과 도난이나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.
- 마. ‘선정업체’는 ‘산업안전보건법’ 및 ‘중대재해처벌법’ 상의 준수해야 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- 바. 본 과업의 수행 도중 발생한 인적, 물적 피해에 대해 선정업체는 배상하여야 한다.

5. 전시 기간 중 유지 보수 및 관리

- 가. ‘선정업체’는 시공된 전시공간 및 제작물, 옥내외 설치물 등 설치된 모든 사항에 대해 유지보수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나. ‘선정업체’는 전시장 내 점검 및 보수 상황이 발생할 경우 ‘발주처’가 지정한 기한 내에 신속하게 수행해야 한다.

4 과업 보고 및 서류 제출

1.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과업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.
2. 과업수행 중 또는 그 이전·이후라도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참석하여 ‘선정업체’는 자재 수급, 설치, 작품구현, 관리 및 운용, 기기 철수 시 작업준비 및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.
3. ‘선정업체’는 전시 종료 후 7일 이내 완료계, 설치 사진자료 등 일반 서류를 제출한다.

5 기타사항

1. 회의참석 및 보고

- 가. ‘선정업체’는 ‘발주처’의 요청이 있을 시 본 과업과 관련된 회의 및 보고회 등에 참석하여 설명하고 질의에 응답한다.
- 나. ‘발주처’의 요청 시 본 과업과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한다.

2. 계약변경 및 변경사항 등의 통보

- 가. 계약서의 내용과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할 시 서면으로 소통하며 합의하여 계약의 변경사항이 생길 수 있다.
- 나. ‘선정업체’는 계약체결 이후 대표자, 담당자 등의 주요한 정보 및 사항이 변동되었을 경우 ‘발주처’로 반드시 통보해야 하며,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시 ‘선정업체’의 책임으로 한다.

3. 이견 발생 시 처리 및 규칙 준용

- 가.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문제가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변경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나.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관련 법령 및 예규에 의하여 결정한다.
- 다.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‘발주처’와 ‘선정업체’가 협의하여 정한다.
- 라. 천재지변 및 기타 재난 상황(코로나19 등)의 상황이 발생 시, 계약에 관한 사항은 ‘발주처’와 ‘선정업체’가 협의하여 정한다.